

연구원 임용 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자격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2. 위의 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 3 조(임용) 연구기관 연구원은 연구기관장의 추천과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다만, 본 대학교 특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위촉할 경우는 관련부서장이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.

제 4 조(임용기간)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 5 조(복무) 연구원은 소속 연구기관장과 지도교수(또는 관련 부서장)의 명을 받아 소정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활동을 보좌하고 본인의 연구에 충실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연구활동) 연구원은 매년 1편 이상의 연구실적물(연구업적 및 연구보고서 포함)을 연구기관장(또는 관련부서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처우) ①연구원의 급료는 연구과제 참여율에 의한 수당으로 연구책임자가 지급하고,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 대학교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연구원에게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」에 의한 연금,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한 퇴직금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.

③연구원은 해당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도서관 및 실험실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 8 조(해임)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
2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3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

제 9 조(임용서류) 연구원 신규임용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5-3-2~2 제5편 위원회, 부속·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